

2022년 제9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5 인	0 인
참석임원	5 인	0 인

1.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9월 20일)

2. 장소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믿음관(본관) 2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참석 임원

- 이사(5인) : 안현수, 김관목, 김종효, 박정호, 김문수

○불참 임원

- 없음.

4. 심의·의결 안건

- 1)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3) 법인 수익사업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4) 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5) 신한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6) 신한대학교 교내시설 개선 관련 기채 신청에 관한 사항

5. 보고 안건

- 없음

6. 회의 내용

[개회선언]

이사장 안현수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을 드리며 본 이사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차 회의록 보고]

이사장 안현수 :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대표 간서명자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을 법인사무국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사무국 국장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전차 회의록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 박정호 : 회의록에 어떠한 상이한 점이 있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석이사 전원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자고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전차 회의록은 수정 없이 접수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결 사항]

< 제1호 안건 :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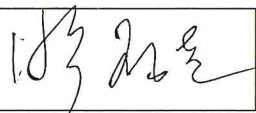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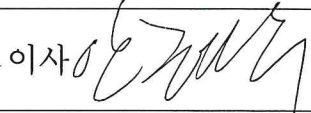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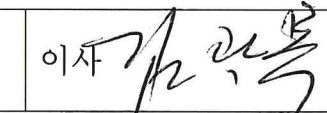
이사장 안현수 : 제1호 안건으로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호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국 장 이 호 : 본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이 사 김관목 :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설명하며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종호 : 동의합니다.

이 사 김문수 : 재청하다.

<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안건인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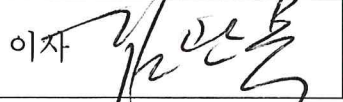
< 제2호 안건 : 법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장 안현수 : 제2호 안건으로 법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은 이 호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국 장 이 호 : 본 안건은 법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오명화 감사님, 지후식 감사님의 임기가 2022.09.04.자로 만료됨에
따라 법인 임원(감사) 선임에 관한 내용임을 설명하다. 지후식 감
사님은 추천감사로 지난 2020.09.05.부터 2022.09.04.까지 1회 역임
하시고, 학교법인 신흥학원 정관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임이 가
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감사 임기동안 감사 직분을 충실히 수행
하셨고, 정관 제21조 제5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되었기에 지후식 감사님을 중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명화 감사님은 2018.09.05.부터 2020.09.04.까지, 2020.09.05.
부터 2022.09.04.까지 2회 역임을 하였기에 중임이 불가합니다. 이
에 배시영 공인회계사님을 신임 감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임기
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이사장 안현수 : 배부된 자료의 이력서 및 경력 등을 참조하시어 본 안전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이사들 회의 자료를 보며 논의하다>

이 사 김문수 : 법인 임원(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의견 제시하다.

이 사 박정호 : 동의하다.

이 사 김관목 : 재청하다.

이사장 안현수 :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지후식 감사님을 중임 및 배시영 감사님을 신임 감사로 선임하시는 것으로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이며, 제 2호 안전인 법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지후식 추천감사 중임 및 배시영 공인회계사님을 신임 감사로 선임(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2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안전 : 법인 수익사업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3호 안전으로 법인 수익사업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전은 이호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국 장 이 호 : 본 안전은 법인 수익사업 중 하나인 신한대인천베드로요양병원의 치료장비 구축 및 전염병 관리 방역시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입금액은 500백만원 이며 국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 받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보전됨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1금융권 메디칼론으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상환 재원은 법인수익사업회계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이어서 설명하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본 안전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문수 : 수익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치료장비 구축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기채금액, 용도 및 기간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이 사 박정호 : 김문수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종효 : 재청하다.

< 제3호 안전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 안전 법인 수익사업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추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호 안전 : 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4호 안전으로 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전은 이호 법인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국 장 이 호 : 본 안전은 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양

간서명	이사 183 김문수	이사 박정호	이사 김종효
-----	------------	--------	--------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종효 :

수익창출을
통하여 법인 책무성을 다하여야 함을 추가 설명하다. 본 안건은
비공개로 처리할 것과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박정호 :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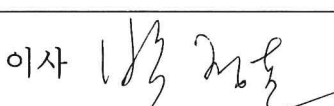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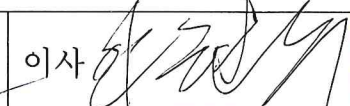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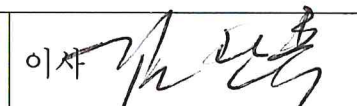
이 사 김문수 : 재청하다.

< 제4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 안건 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비공개 및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
포하다.

< 제5호 안건 : 신한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5호 안건으로 신한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
다. 본 안건은 신한대학교 이용우 교무 부처장이 설명하도록 하
겠습니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교무부처장 이용우 : 제5호 안건은 교수, 부교수, 강사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년보장 임용 1명, 교수 승진대상자 8명, 부교수 승진대상자 5명입니다. 2022.10.01.자 정년트랙전환 대상자 4명, 2022.12.1.자 교원 재임용이 1명입니다. 다음으로 강사입니다. 강사 임용은 1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특별 승진에 대한 요건 및 객관성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교무부처장 이용우 : 특별 승진 대상자 및 요건·절차·적합성에 대해 추가 설명하다.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관목 : 본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종효 : 동의하다.

이 사 박정호 : 재청하다.

< 제5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 안건인 신한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안건 : 신한대학교 교내시설 개선 관련 기채 신청에 관한 사항 >

이사장 안현수 : 제6호 안건으로 신한대학교 교내시설 개선 관련 기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한대학교 최승구 총무처장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자료를 배부하다 >

총무처장 최승구 : 본 안건은 신한대학교 교내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입금액은 3,033,505,000원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제1금융권에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상환재원은 교비회계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이어서 설명하다.

< 각 이사들 배부된 자료를 보며 논의를 하다 >

이사장 안현수 : 본 안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문수 :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

이 사 김문수 : 동의하다.

이 사 박정호 : 재청하다.

< 제6호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이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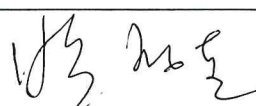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다 >

이사장 안현수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 안건인 신한대학교 교내시설 개선 관련 기채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불임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폐회선언]

이사장 안현수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이사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은 저와 김관목 이사님, 그리고 박정호 이사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사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회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2022. 9. 30.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안 현



이 사

김 관 목



이 사

김 문 주



이 사

김 종 효



이 사

박 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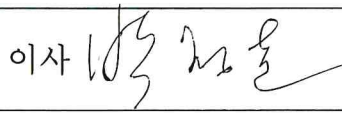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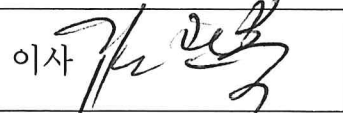


간서명	이사 박정호	이사 안현	이사 김관목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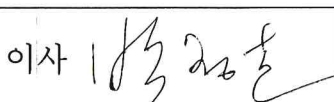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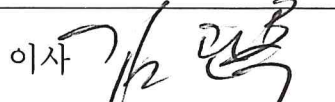
[붙임 1]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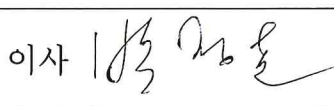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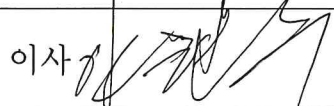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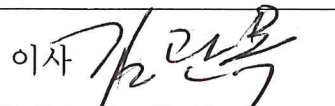
현 행	개 정(안)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u>3년</u>이 경과한 자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u>6년</u>이 경과한 자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5.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이하 "임용"이라 한다)</u>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③ (생 략)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용</u>에 관한 사항 6.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u>5인</u>의 위원으로 <u>조직</u>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다. (생 략) <u><신 설></u>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u>설치 및 구성 등</u>)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u>9명</u>의 위원으로 <u>구성</u>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u>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것 2.3. (생략) <u><신설></u> <u><신설></u>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u><신설></u>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2명</u> 이상 포함할 것 2.3. (현행과 같음)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u>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u>,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u>60일 이내</u>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u>60일</u>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u>이내</u>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 (생략)	제60조(징계의결) ① (생략)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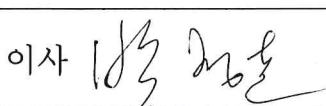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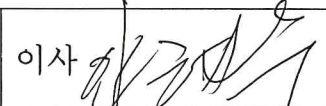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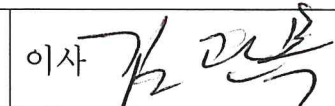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이사장에게</u> 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이사장 및 관할청에</u> 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u>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u>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u>임용</u>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칙></u> <u>이 정관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u>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2] 법인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임원 신·구 대비표

현행				변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안현수	2021.12.28.~ 2025.12.27.	교육경험	이사장	안현수	2021.12.28.~ 2025.12.27.	교육경험
이사	김관목	2021.12.28.~ 2025.12.27.	상임이사	이사	김관목	2021.12.28.~ 2025.12.27.	상임이사
이사	김종호	2020.05.16.~ 2024.05.15.	교육경험 개방이사	이사	김종호	2020.05.16.~ 2024.05.15.	교육경험 개방이사
이사	박정호	2022.05.16~ 2026.05.15.		이사	박정호	2022.05.16~ 2026.05.15.	
이사	김문수	2021.12.28.~ 2025.12.27.	개방이사	이사	김문수	2021.12.28.~ 2025.12.27.	개방이사
이사	공 석 *강성중 이사 중임 취임승인 진행			이사	공 석 *강성중 이사 중임 10월초 승인 예정		
이사	공 석 *이인규 이사 2022.06.28.자 사임			이사	공 석 *후임임원 적임자 물색중		
감사	오명화	2020.09.05.~ 2022.09.04	공인회계사	감사	배시영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2년	공인회계사
감사	지후식	2020.09.05.~ 2022.09.04	추천감사	감사	지후식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2년	추천감사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3] 법인 수익사업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자금차입 총괄표

구 분	내 용	비 고
차입금액	금500,000,000원(금오억원)	
차입처	제1금융권	
차입유형	메디칼론	
예상금리	고정금리: 12개월 기준금리(現 6.32%) + 2.2%	
상환조건	1년 거치, 일시상환	
담보	법인부동산 담보 물건 제공 없으며, 의료사업자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수령받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대하여 양도담보 취득하는 것으로 채권 보전됨.	
자금용도	치료장비 구축 및 전염병 관리 방역시설 강화 등	상세내역 참조
상환재원	법인수익사업회계	

☐ 상세 차입내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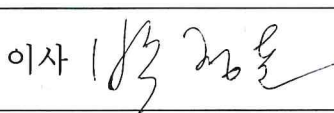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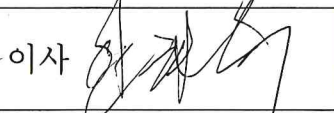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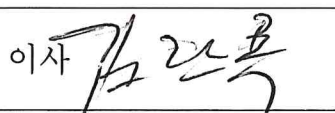
(단위: 원)

no	내 용	금 액(원)	비 고
1	육창치료장비 및 레이저(노인성 피부질환) 의료기기 구입	100,000,000	
2	전염병(코로나 19 등)관리 방역 시설 강화 및 격리병동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응급산소실 등)	300,000,000	
3	직원 고용창출(약 65名)에 따른 운영비 외	100,000,000	
	합 계	500,000,000	

☐ 차입사유: 치료장비 및 의료기기를 구축하고, 전염병 관리 방역시설을 강화하는 등 요양병원의 운영 안정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함.

[붙임 4] 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소재지: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붙임 5] 신한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관련

○ 교무팀 2022-817(2022.09.20.)

☐ 2022.10.1자 정년보장 임용 제청: 총 1명

연 번	정년보장 대상자 인적사항					승진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직급	연봉	임용기간
1								

☐ 2022.10.1자 승진 임용 제청: 총 13명

1) 교수 승진대상자: 8명

연 번	승진 대상자 인적사항					승진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직급	연봉	임용기간	비 고
1									
2									
3									
4									
5									
6									
7									
8									

간서명	이사	이성호	이사	김민석	이사	김민석
-----	----	-----	----	-----	----	-----

□ 부교수 승진대상자: 5명

연 번	승진 대상자 인적사항					승진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직급	연봉	임용기간	비 고
1									
2									
3									
4									
5									

□ 2022.10.1자 정년트랙전환 임용 제청: 총 4명

1) 정년트랙 트랙전환 대상자 : 4명

연 번	트랙전환 대상자 인적사항						변동사항			비고
	구분	소속학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구분	연봉	임용기간	
1										
2										
3										
4										

□ 2022.12.1자 재임용 제청: 총 1명

연 번	소 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최초임용 일	조건부 재임용기간	비고
--------	-----	----	----	------	-----------	--------------	----

간서명	이사 183 조영호	이사 183 조영호	이사 183 조영호
-----	------------	------------	------------

☐ 강사 임용 제청: 총 1명

학과(전공)	성명	전업 여부	강의과목	주 당 시수	임용기간	특별채용 사유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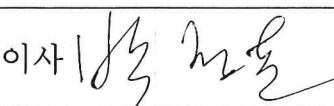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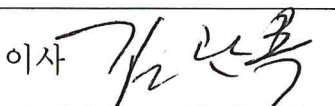
[붙임 6] 신한대학교 교내시설 개선 관련 기채 신청에 관한 사항

☐ 자금차입 및 기채 신청 사유

- 신한대학교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진리관 및 말씀관 소방전기시설 개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용 노후PC 교체 등 교내시설 개선을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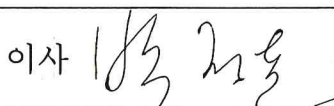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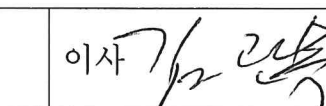
☐ 자금차입 총괄표

구 분	내 용	비고
차입금액	금3,033,505,000원(금삼십억삼천삼백오십만오천원)	
차입처	제1금융권	
예상금리	6.47%(변동금리, 6개월 기준금리 + 2.89%, 2022.9. 기준)	
상환조건	36개월(3년 거치 일시상환)	
담보	수익용 기본재산	
자금용도	신한대학교 교내시설 개선	
상환재원	교비회계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

□ 담보제공 재산신청 내역

구분	소재지	지 번	면적 (㎡)	담보설정내역			
				설정 권리	기간	금액 (천원)	등기 권리자
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상봉암동	8	6374.8	근저당	담보제공 허가일로 부터 3년	기채 액의 120%	제1 금융권 (기채처)
		8-13	14				
		8-15	18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24	327				
		119-222	33				
		119-145	496				
건물	경기도 남양주시 상봉암동	8	670.87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24	786.26				
		119-222	182.32				
		119-145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6 (301호)	131.04				
		761-6 (302호)	114.66				
		761-6 (303호)	74.8				
		761-6 (501호)	320.5				
		761-6 (601호)	320.5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	--	--	---